

경기도 입법예고 제2024 - 57호

「경기도 감사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내용을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17일

경기도지사

경기도 감사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경기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따라 합의제감사기구로서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감사의 전반적인 운영 체계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기본원칙, 독립성 확보, 전문성 강화, 비밀유지의무 등에 관하여 규정함
- 나. 연간 감사계획 수립, 실시시계획 등 감사계획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다. 감사단 구성, 자료제출 요구 등 감사실시 기준에 관하여 규정함
- 라. 감사결과의 처리기준 등 감사결과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마. 재심의 처리, 이행결과 제출·점검 등을 규정함
- 바. 표창, 자체감사기구 평가, 감사정보시스템 등에 관하여 규정함
- 사. 감사담당자의 자격기준, 이해충돌방지 등에 관하여 규정함

3. 자치법규안 : 별도 붙임

4.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기도지사(참조: 감사총괄담당관, 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전화: 031-8008-2970, 팩스: 031-8008-2058, 전자메일 kdi2580@gg.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경기도 감사규칙 전부개정규칙안

경기도 감사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경기도 감사 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경기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에 따라 경기도지사가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사대상기관”이란 「경기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6조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2. “감사담당자”란 경기도 감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소속되어 감사활동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감사단”이란 일정한 감사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편성한 복수의 담당자를 말한다.
4. “공무원등”이란 감사대상기관에 속한 공무원 또는 임직원 등을 말한

다.

제3조(적용범위) 위원회가 감사대상기관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감사의 종류) ① 위원회가 실시하는 감사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종합감사: 감사대상기관의 주요업무 및 조직·인사·예산·회계 등 업무 전반의 적법성·타당성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2. 특정감사: 특정한 업무·사업·자금 등에 대하여 문제점을 파악하여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3. 복무감사: 감사대상기관에 소속된 사람의 복무의무 위반, 비위사실, 근무실태 점검 등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감사
4. 일상감사: 주요 업무 집행에 앞서 그 업무의 적법성·타당성을 점검·심사하는 감사

② 제1항제4호에 따른 일상감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5조(감사의 기본원칙) 위원회는 감사를 수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공무원등의 인권을 존중하고 관련 법령을 준수한다.
2. 감사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범위 안에서 감사를 실시한다.
3. 감사대상기관 운영의 문제점을 미리 예방하고 발견된 문제점을 효과적으로 해결하는데 중점을 둔다.
4. 과학·정보기술의 이용 확대 등으로 감사의 신뢰도와 수용도를 제고하고 감사대상기관과 공무원등의 감사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한다.

제6조(독립성 확보) 위원회는 위원회의 독립성이 보장되도록 다음 각 호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1. 감사대상기관과 실질적으로 분리된 조직의 설치와 운영
2. 감사활동에 필요한 예산 확보
3. 감사담당자 우대조치 등을 통한 우수인력의 확보 및 교육훈련의 실시
4. 그 밖에 위원회의 독립성 보장에 필요한 사항

제7조(전문성 강화) ① 위원회는 우수한 전문인력을 감사담당자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감사담당자의 전문성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감사담당자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 등을 고려하여 감사임무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감사담당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감사전문 교육기관의 감사·회계교육 등을 이수하도록 하거나 필요한 경우 자체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비밀유지의무 등) 위원회의 위원장 및 감사담당자(이하 “감사담당자 등”이라 한다)와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감사업무 처리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나 생산·취득한 자료를 법령에 근거없이 다른 기관 또는 이해관계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감사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제9조(감사활동 관련 협조 등) ① 위원회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에 따라 감사활동에 필요한 경우 「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도민권익위원회 및 위원회 외의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기관 또는 부서(이하 “기관등”이라 한다)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기관등은 이에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감사계획 수립

제10조(연간 감사계획 수립·통보) ① 위원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연간 감사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1. 감사의 종류와 감사대상기관
2. 감사 기간과 인원
3. 감사의 목적 및 필요성
4. 감사의 범위
5. 감사사항
6.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연간 감사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감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감사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연간 감사계획을 통보한 후 이를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실시하여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한다.

제11조(감사계획의 조정 등) ① 위원회는 제10조의 연간 감사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 규정」 제6조에 따라 감사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미 수립한 감사계획 중 감사사항, 감사대상기관, 감사의 범위, 감사기간 등 주요 내용을 변경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시장·군수, 「경기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에 따른 출자·출연기관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경기도가 설립한 지방공사의 장은 연간 감사계획을 수립할 경우 중복감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위원회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고 감사계획이 수립되면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감사실시계획 수립 등) ① 위원회는 제10조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감사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2. 감사 착안사항, 감사방법 및 감사자료 확인결과
3. 감사단 편성 및 개인별 감사사무 분장
4.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감사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감사예정일 7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감사실시계획의 주요 내용을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체감사의 경우 신속히 감사를 실시하여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전에 통보하지 않을 수 있다.

1. 감사대상
2. 감사기간 및 감사인원
3. 감사의 범위

제13조(공개감사의 운영) ① 위원회는 감사성과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계획 등을 미리 공개하여 이해관계인 또는 경기도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감사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그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사대상기관에 통보 후 1개월 이내에 의견 제출자에게도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③ 그 밖에 공개감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정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4조(감사의 주기 및 생략 등) ① 종합감사는 3년의 주기로 실시한다. 다만, 위원회는 감사대상기관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한 경우 종합감사의 주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청렴도 평가결과 우수기관, 자체감사기구 평가 우수기관 등 감사대상 사무를 적법하고 공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노력한 감사대상기관에 대해서는 감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5조(중복감사 금지) ① 위원회는 감사원 감사 등을 통해 이미 실시된 사안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종전의 감사결과를 활용하여야 한다.

1. 새로운 증거 또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2. 감사 증거서류 등이 위조·변조된 것이 증명된 경우
3. 감사결과에 영향을 미칠만한 중요한 사항이 누락된 경우

② 위원회는 감사원 등의 감사 또는 검찰·경찰 등의 수사가 이미 이루어졌거나 진행 중인 경우에는 감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장 감사실시 기준

제16조(감사의 사전준비) ① 위원회는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감사자료를 수집·분석하는 등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1. 관련 법령 및 훈령·예규·지침 등 내부규정
2.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의 기능·조직·인력·예산 등 일반현황
3. 주요 업무계획 및 심사분석 결과
4.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
5. 언론보도사항, 국회 및 지방의회 논의사항
6. 기존 감사결과 및 처분요구 집행상황
7. 그 밖에 민원, 감사정보, 감사대상의 일부에 대한 표본조사,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이행상황 등 각종 감사자료

② 위원회는 감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제1항 각 호의 감사자료를 조사·확인하는 등 감사대상기관에 대하여 사전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감사대상기관 중 시·군에 대한 사전 조사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 규정」 제7조에 따른다.

③ 위원회는 감사의 사전 준비를 위해 필요한 경우 「경기도 감사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감사자문위원회, 외부전문가 등에게 자문할 수 있다.

제17조(감사단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감사를 위해 감사단을 구성하고 개인별 감사사무 분장을 정하여야 한다.

② 실무경험, 전문성이 요구되는 등 감사의 성질상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담당자가 아닌 경기도 소속 공무원을 감사단으로 편성하거나 외부전문기관 또는 외부전문가(이하 “외부전문가등”이라 한다)를 감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외부전문가등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및 제29조를 적용할 때에는 감사담당자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라 감사에 참여하는 외부전문가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감사단의 장(이하 “감사단장”이라 한다)은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감사단에 포함된 감사담당자, 외부전문가등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12조제1항에 따른 감사계획
2. 감사대상기관의 주 기능 및 임무
3. 감사대상 업무의 특수성
4. 감사 착안사항 및 감사기법
5. 실지감사 시 주의사항
6. 그 밖에 감사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18조(실지감사의 실시 등) ① 감사는 실지감사나 서면감사의 방법에 의한다.

② 위원회는 실지감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감사대상기관과 협의하여 감사장 설치와 감사에 필요한 자료를 미리 구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③ 감사활동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활용하여 할 수 있으며 그 활용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회 규정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공무원등이나 외부인이 감사자료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다음 각 호의 보안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감사장 내 서류보관함에 잠금장치 사용

2. 사무용 컴퓨터 및 이동식 저장장치에 암호 설정
 3. 감사장 철수 시 감사자료가 감사장 또는 컴퓨터 등에 남지 않도록 파기
 4. 그 밖에 감사자료의 유출을 방지하는데 필요한 보안조치
- ⑤ 감사단장은 감사기간 내에 감사를 종결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기간동안 감사를 마칠 수 없는 경우에는 감사대상기관에 그 사유와 연장 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통보한 후 감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⑥ 감사단장은 감사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감사 종료 전에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를 대상으로 주요 감사결과를 설명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9조(자료제출 요구 등) ① 위원회는 감사에 필요한 경우 감사대상기관이나 그 소속 직원 또는 그 밖에 감사사항과 관련이 있는 자(이하 “감사대상기관등” 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1. 출석·답변의 요구(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요구를 포함한다)
2. 관계서류, 장부 및 물품 등의 제출 요구
3.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의 조사
4. 금고·창고·장부 및 물품 등의 봉인 또는 보관 요구
5. 증명서·경위서·진술서·확인서 등의 제출 요구
6. 그 밖에 감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때 일시, 장소, 대상 등을 기재한 요구서를 보내야 한다. 다만, 실지감사 중이거나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로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치는 감사에 필요한 최소한으로 해야 하고 조

치를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④ 위원회는 감사대상기관등이 아닌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이용하지 않으면 감사를 할 수 없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해당 기관 등에 자료 또는 정보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1. 자료 또는 정보가 필요한 감사의 명칭
2.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구체적 범위 및 이용 용도
3. 자료 또는 정보를 이용하지 아니하면 감사가 불가능한 사유

⑤ 위원회는 감사를 위하여 제출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감사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제20조(증거서류의 확보 등) ① 위원회는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입증에 필요한 관계서류 등의 원본 또는 사본을 제출받아야 하고 그 대상이 물건이나 상태인 경우 사진 촬영 등의 방법으로 증거를 확보하여 추가적인 감사나 법적 분쟁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증거서류의 증거능력과 감사대상기관의 부담정도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증거서류의 신빙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증거서류의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비밀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 금고·창고·장부 및 물품 등을 봉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즉시 증거를 확보하고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에 협조를 요청하는 등 증거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1조(확인서의 요구 등) ① 위원회는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의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자로부터 관련 사항에 대한 사실관계 등을 기술한 별지 제1호서식의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② 위원회는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이 변상명령,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중요한 사안에 관련된 관계자의 책임소재와 한계를 규명하고 행위의 동기, 배경 또는 변명을 듣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문답서를 작성한다.

③ 감사활동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에 따른 근무시간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증거인멸 우려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동의서를 제출받아 근무시간 이후에도 실시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그 사유 및 개선방안 등을 듣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사항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정한 직위의 책임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질문서를 보내고 별지 제5호서식의 답변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실지감사 중인 때에는 감사단장이 질문서를 발부할 수 있다.

제22조(현지 조치) 위원회는 감사 중에 경미한 사항으로 시정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즉시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23조(감정·용역 등의 의뢰) ① 위원회는 감사 중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험·연구기관, 검사기관, 공공기관 등에 자문·조사·감정·용역·검사 등을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소요되는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감사결과 처리

제24조(감사결과와 보고 등) 감사단장은 감사가 종료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감사목적 및 범위 등 감사실시개요
2. 감사결과 처분요구 및 조치사항
3. 감사대상기관의 모범사례 및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보고할 필요가 인정되는 사항

제25조(감사결과와 처리기준 등) ① 위원회는 감사결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1. 변상명령: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상책임이 있는 경우
2. 징계 또는 문책요구: 「지방공무원법」과 그 밖에 법령 등에 규정된 징계·징계부가금 또는 문책사유에 해당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게을리 한 경우
3. 시정요구: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추정·회수·환급·추급 또는 원상복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주의요구: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그 정도가 징계 또는 문책 사유에 이르지 아니할 정도로 경미하거나 감사대상기관에 대한 제재가 필요한 경우
5. 개선요구: 감사 결과 법령상·제도상 또는 행정상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권고: 감사 결과 문제점이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그 대안을 제시하고 감

사대상기관의 장 등으로 하여금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

7. 통보: 감사 결과 비위 사실이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요구를 하기에 부적합하여 감사대상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8. 고발·수사의뢰: 감사 결과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제4호에 따른 주의요구는 위법성 또는 부당성의 정도에 따라 다음 각 호로 구분하여 처분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1. 훈계: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라고 인정되나 그 정도가 징계 또는 문책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우

2. 경고·기관경고: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에 대해 경계하도록 하는 경우로써 경고는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기관경고는 감사대상기관에 적용한다.

제26조(감사결과처리 심의 지원) 위원회는 제25조에 따른 감사결과처리를 지원하기 위해 전담 조직과 필요한 전문 인력을 배치하여 사전검토회의 등을 운영할 수 있다.

제27조(감사결과통보 등) ① 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24조의 감사결과 보고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감사결과를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1. 제25조에 따른 감사결과 처분요구 및 조치사항

2. 감사결과 종류별 처리기한 및 결과보고 의무

3. 재심의 신청에 대한 안내문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감사결과 종류별 처리기한 및 결과 보고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변상명령: 변상책임자가 변상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3개월 내에 변상하도록 조치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보고할 것
2. 징계 또는 문책요구: 1개월 내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보고할 것
3. 시정요구: 2개월 내에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보고할 것
4. 개선요구·권고·통보: 2개월 내에 집행 가능한 사항은 그 기간 내에 적정한 조치 후 그 결과를 지체없이 보고하고 집행에 2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사항은 2개월 내에 추진일정 및 계획 등이 포함된 집행계획을 우선 제출한 후 집행계획에 따라 조치한 결과를 지체없이 보고할 것

제28조(징계 또는 문책사유의 시효정지 등) 징계 또는 문책사유의 시효정지, 조사 개시 통보 등에 관한 사항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다.

제29조(감사결과의 공개) ① 위원회는 재심의 신청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감사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감사결과를 경기도청 누리집에 공개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신고자 또는 개인정보 보호가 필요한 내용이 포함된 감사결과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장 감사결과 사후관리

제30조(재심의 처리 등) ①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위원

회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감사결과에 따른 재심의 처리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5조,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제30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다.

③ 그 밖에 재심의 처리를 위해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회 규정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1조(이행결과의 제출)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감사결과의 조치사항을 이행하고 그 이행결과를 위원회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2조(이행결과의 확인) ① 위원회는 제31조에 따라 제출된 감사대상기관의 이행결과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보완자료를 요구하거나 이행을 독촉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감사결과 처분요구 및 조치사항이 적정하게 처리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 확인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이 제27조제2항에 따른 처리기한 내에 적정한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그 사유 및 조치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감사대상기관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결과 처분요구 또는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때에는 추가 감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6장 감사활동의 지원

제33조(표창추천) 위원회는 공직기강 확립, 행정능률 향상, 예산 절감 등에 공적이 있는 자 또는 기관에 대하여 표창을 추천할 수 있다.

제34조(자체감사기구 평가 등) ① 위원회는 조례 제16조제2호, 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기관의 자체감사기구의 내부통제제도를 내실화하고 그 운영의 적정성, 공정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감사대상기관의 자체감사기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도정 감사 정책 및 감사계획을 수립할 때 제1항의 평가결과를 반영할 수 있으며 우수 기관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35조(감사정보시스템) ① 위원회는 감사 방식을 개선하고 감사 행정의 효율성·신뢰성을 향상하기 위하여 감사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감사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한 전담 조직을 설치하고 전문 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제36조(감사교육) 위원회는 감사대상기관에 속한 자체감사기구의 감사담당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장 감사담당자 등

제37조(감사담당자의 자격기준) ① 감사담당자의 자격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다.

② 감사담당자를 임용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38조(감사공무원증) ① 감사공무원증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공무원인 감사담당자 및 위원회에 파견되어 감사활동을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발급한다.

② 감사공무원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

식의 감사공무원증 발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③ 감사담당자가 퇴직·전보 등의 사유로 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감사공무원증을 위원회에 반납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감사공무원증 발급, 재발급, 반납시 별지 제9호서식의 감사공무원증 관리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39조(이해충돌방지) ① 감사담당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직무를 회피하거나 지체없이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감사대상이 되는 기관, 부서 또는 업무와 관련이 있는 사람과 개인적인 연고나 이해관계 등이 있어 공정한 감사수행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감사대상이 되는 기관, 부서 또는 업무와 관련된 주요 의사결정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경우

3. 그 밖에 공정한 감사 수행이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거나 감사담당자등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감사담당자등을 감사에서 제외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0조(청렴 의무) ① 감사담당자등은 경기도민으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높은 청렴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감사담당자등은 감사의 독립성이나 감사활동의 공정한 수행을 저해하는 청탁이나 압력 등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그 사실을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위원회는 보고 사실을 조사하여 적절한 조치

를 하여야 한다.

제8장 보칙

제41조(감사의 대행) 위원회는 감사 등의 효율성을 높이고 중복감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감사대상사무 중 일부를 감사대상기관의 자체감사기구에게 대행하게 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42조(준용 등) ① 이 규칙에 규정된 것 외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그 밖에 이 규칙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정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소방기본법」 제3조에 따라 경기도에 설치하는 소방기관 소속 감사 담당부서는 이 규칙을 준용하여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9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 규칙 시행 전에 행한 행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진행 중인 감사와 종전 감사에 따른 후속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종전의 규칙에 따른 감사와 감사결과에 대한 처리 등 조치는 이 규칙에 따른 감사위원회의 감사와 감사결과에 대한 처리 등 조치로 본다.

■ 경기도 감사 규칙[별지 제1호서식]

확 인 서

1. 제 목 :

2. 내 용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나. 감사결과 확인된 사항

3. 확인자(관련자) 의견

<작성 안내문>

감사결과가 확정된 것은 아니며 감사사항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관련자 의견을 충분히 작성하여 주시고 증빙서류가 있을 경우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관련자 조서

소속	직위 (직급)	성명	생년월일	담당기간	담당업무	현근무처 (현직급)	비고

※ 상기 관련자들이 본 확인서를 열람하였음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소속 직위 성명 (인)

입회자 소속 직위 성명 (인)

■ 경기도 감사 규칙[별지 제2호서식]

문 답 서

주 소 :

소 속 :

직위 및 직급 :

성 명 : (한자:) (생년월일:)

(시작시간 : 20 . . . 시 분)

위 사람은 「○○○○감사」 관련 ○○○ 업무 처리건에 대하여 20 년 월 일 ○○○사무실에서 감사자 경기도 감사위원회 ○○(직급)○○○(성명) (입회자 경기도 감사위원회 ○○(직급)○○○(성명))과 다음과 같이 자유로이 임의 문답하다.

<사전고지> 문답에 앞서 귀하의 진술이 본인에게 불리하다고 생각되면 답변을 하지 않아도 되며, 답변은 객관적 근거와 조리 맞도록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 : 위 사항과 관련 귀하의 재직기간과 담당직무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 :

(감사사항에 대한 질문 추가)

문 : 마지막으로 위 사항에 대하여 더 하실 말씀이나 증거가 있다면 자유롭게 진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 :

(종료시간 : 20 . . . 시 분)

위와 같이 문답한 후 진술인에게 (열람, 낭독)하게 한 바 진술 내용과 상위 없으며 오거나 증감할 사항이 전혀 없음을 확인하므로 간인한 후 서명(날인, 무인)하게 하다.

		년	월	일		
진	술	자	소속	직위(급)	성명	(인)
감	사	자	소속	직위(급)	성명	(인)
입	회	자	소속	직위(급)	성명	(인)

동 의 서

소 속:

직위(급):

성 명: (생년월일: 0000.00.00.)

본인은 20 . . . ○○감사와 관련하여 ○○에서 감사를 받음에 있어
다음 사항에 동의합니다.

1. 본인은 감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실대로 진술하겠습니다.
2. 만약 근무시간 안에 감사활동이 마무리 되지 못하면 근무시간이 지
나더라도 ((시간기재) 부터 (시간기재) 까지) 감사를 받겠습니다.

<작성 안내문>

귀하께서는 동의서 작성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충분한 소명 기회부여, 사실관계 확인 등 감사를 위해 필요할 경우 추가로 감사활동 할 수 있음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20 . . .

진술자:

인(서명)

경기도 감사위원회위원장

질 문 서

발부번호		
제 목 :		
《질 문 사 항》		
20 년 월 일		
기관명	직위	○○○ 귀하
경기도 감사위원회 감사단장 (또는 위원장)		○○○(인)
다음 사항에 대해 사실대로 작성하여 20 . . .까지 질문서 원안과 함께 답변서를 제출하여 주시고, 본 내용을 대외에 누설되지 않도록 관련 법령에 따라 보안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 문 내 용》		
귀 기관에서 0000. 00. 00.부터 0000. 00. 00. 사이에 ○○○○○○ 관련 업무를 처리한데 대한 질문입니다.		
1.		
2.		
3.		
※ 필요시 확인서 첨부		

【 질문서 관리 및 답변서 작성 관련 안내문 】

위 질문서의 내용은 경기도 감사위원회의 최종적인 공식의견이 아니고 현재 내부 검토 중인 사항으로서 외부에 유출될 경우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보안 유지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 기관에서 보내주신 답변서 내용은 최종 검토 후 감사결과에 인용하거나 감사결과에 붙여 외부에 공개할 수 있고, 답변이 사실과 다를 경우 추가 감사를 실시할 수 있으니 귀 기관에서는 질문사항에 대해 성실하고 책임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

위 질문서 내용은 검토 중인 사항이므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등 법령에서 정한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사전조치하지 않도록 하되, 긴급한 개선·처리 필요 등 사유로 사전조치한 경우에는 그 조치 내용(관련 자료 포함)을 경기도 감사위원회에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조치는 귀 기관의 자율적 판단에 따른 것으로 감사결과 처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 적극행정 면책제도 안내문 】

감사를 받는 자는 감사결과 지적사항이 「경기도 적극행정 면책 및 경고등 처분에 관한 규정」에 규정된 면책대상에 해당 된다고 판단될 경우 같은 규칙에서 정한 절차와 서식에 따라 면책신청 할 수 있습니다.

■ 경기도 감사 규칙[별지 제6호서식]

재 심 의 신 청 서

1. 신청인 (기관의 장)	주소 (기관의소재지)			
	기관명		직명	
	성명		전화번호	
2. 처분요구 대상자	실국		부서	
	직위 (직급)		성명	
3. 재심의 신청의 대상이 되는 처분요구 등의 내용				
4. 재심의 신청의 취지 및 그 이유				
5. 처분요구 등을 통보받은 날				
6.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				

「경기도 감사 규칙」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위와 같이 재심을 신청합니다.

20

신청인(기관의 장)

(직인)

<주의사항> 감사대상기관이 경기도 본청 소속 부서일 경우 소속 실·국장인, 소속 기관일 경우 해당 기관의 장이 재심의 신청인이 됩니다.

첨부서류 : 표지 포함 매.

경기도 감사위원회위원장 귀하

■ 경기도 감사 규칙[별지 제7호서식]

감사공무원증

(앞 쪽)

사 진 3cm×4cm (반명함판)	소 속	NO.
	성 명 생년월일	감사공무원증
	위 사람은 경기도 감사공무원임을 증명함	
	년 월 일	
	경기도지사	

(뒤 쪽)

<p>유의사항</p> <ol style="list-style-type: none">1. 이 증명을 제출시에는 반납하여야 한다.2. 이 증명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편함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 감사 규칙[별지 제8호서식]

감사공무원증 (재)발급 신청서

1. 소속 및 직위 :
2. 직 급 :
3. 성 명 :
4. 생 년 월 일 :
5. (재)발급 신청사유 :

위와 같이 감사공무원증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서명)

경기도 감사위원회 귀하

※ 필요시 위 신청서의 내용을 포함한 공문으로 신청을 대신할 수 있음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자체감사기구의 설치) ① 중앙행정기관등에는 자체감사기구를 둔다. 다만, 중앙행정기관등의 규모, 관장 사무 또는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수 등을 고려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자체감사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자체감사기구로 두어야 한다.

제6조(합의제감사기구의 운영) ① 제5조제2항에 따른 합의제감사기구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합의제감사기구 위원의 임용, 임기, 자격, 직급, 결격사유 및 직무 등에 관한 사항은 제8조부터 제15조까지, 제20조, 제28조제2항, 제29조, 제38조제3항 및 제39조제5항의 감사기구의 장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합의제 감사기구의 위원에 대하여는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및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합의제감사기구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감사담당자의 임용) ①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감사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질과 적성을 갖춘 사람을 감사담당자로 임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담당자가 갖추어야 하는 최소한의 자격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감사담당자를 임용할 때에는 해당 감사기구의 장 또는 제5조제2항에 따른 합의제감사기구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감사담당자의 장기근속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7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사람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감사담당자가 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정직 이상의 징계 또는 문책(제4호에 따른 징계 또는 문책은 제외한다)을 받은 날부터 3년(파면 또는 문책에 따른 퇴직의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정직 미만의 징계 또는 문책(제4호에 따른 징계 또는 문책은 제외한다)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형법」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 제355조 및 제356조에 해당하는 행위로 징계, 문책 또는 벌금 이상의 형벌을 받은 사람

제18조(감사담당자의 우대)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관계 법령, 자치법규 또는 정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담당자에 대하여 근무성적평정, 임용 등에서 우대할 수 있다.

제19조(자체감사계획의 수립·실시) ① 감사기구의 장은 자체감사 대상기관에 대한 감사계획을 수립하여 자체감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하는 자체감사의 종류, 감사계획의 수립, 자체감사 대상기관에 대한 감사계획 통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자료 제출 요구) ① 감사기구의 장은 자체감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자체감사 대상기관 또는 그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출석·답변의 요구(「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요구를 포함한다)
2. 관계 서류·장부 및 물품 등의 제출 요구
3.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의 조사
4. 금고·창고·장부 및 물품 등의 봉인 요구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는 감사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를 요구받은 자체감사 대상기관 및 그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④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자체감사 대상기관이 아닌 중앙행정기관등이 보유한 자료 또는 정보를 이용하지 아니하면 감사를 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중앙행정기

관등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감사기구의 장 및 감사담당자는 감사를 위하여 제출받은 정보 또는 자료를 감사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다.

제21조(실지감사) 감사기구의 장은 자체감사 대상기관에 감사담당자를 보내 실지 감사를 할 수 있다.

제22조(일상감사) ① 감사기구의 장은 자체감사기구가 소속된 기관의 주요 업무 집행에 앞서 그 업무의 적법성·타당성 등을 점검·심사하는 일상감사를 하여야 한다.

② 감사기구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일상감사에 따라 확인된 사항에 대하여는 자체감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일상감사의 대상·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감사결과와 통보 및 처리) ① 중앙행정기관등의 장(감사기구의 장이 해당 기관의 집행기관과 독립하여 설치되어 있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감사기구의 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와 제24조, 제25조, 제32조 및 제34조에서 같다)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체감사가 종료된 후 60일 이내에 그 감사결과를 자체감사 대상 기관의 장 및 감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원에 대한 통보는 특별시·광역시·도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을, 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도와 행정안전부장관을, 특별시·광역시·도 교육청의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을,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의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이하 “주무기관”이라 한다)의 장을 각각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감사결과에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변상명령, 징계·문책, 시정, 주의, 개선, 권고, 고발 등의 처분 요구 또는 조치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23조의2(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①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그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

구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면책의 구체적인 기준, 운영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징계 또는 문책사유의 시효정지) ①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특정사건에 대한 조사를 개시한 때와 이를 종료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 개시의 통보를 받은 기관·단체의 장은 감사가 진행 중인 특정사건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조사 개시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 또는 문책 절차를 진행하지 못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징계 또는 문책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여 법령 또는 해당 기관·단체가 정한 징계 또는 문책 사유의 시효기간이 만료되거나 시효의 남은 기간이 1개월에 못 미치게 될 때에는 그 시효기간은 제1항에 따른 조사종료의 통보를 받은 날 또는 제23조제2항에 따라 처분 요구 또는 조치사항을 통보받은 날(제25조제1항에 따라 재심의를 신청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1개월이 경과한 날에 만료되는 것으로 본다.

제25조(재심의신청 등) ① 자체감사를 한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으로부터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은 그 감사결과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통보를 한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변상명령에 대한 불복에 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심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이유와 내용을 분명히 밝히고 필요한 증거자료가 있으면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재심의를 신청받은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지체 없이 자체감사 기구에 재심의신청을 검토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심의신청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때에는 각하한다.

④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재심의신청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

에는 기각하고,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감사결과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재심의신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재심의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재심의 사건의 심리와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감사결과의 공개) 중앙행정기관등의 감사결과는 원칙적으로 공개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7조(외부전문가 등의 참여) ① 감사기구의 장은 회계·보건·환경·건설 등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 등이 요구되는 분야를 감사하는 경우 외부 전문기관 또는 외부전문가를 감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감사에 참여하는 외부 전문기관 또는 외부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감사에 참여하는 외부전문가는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및 제29조를 적용할 때에는 감사담당자로 본다.

제29조(비밀유지 의무) 감사기구의 장 및 감사담당자와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3조(중복감사 금지) 감사기구의 장은 이미 감사원 감사등이 실시된 사안에 관하여는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거나 중요한 사항이 누락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체감사기구의 자체감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종전의 감사결과를 활용하여야 한다.

제34조(감사계획 협의) ① 감사원과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필요한 경우 중복감사를 방지하고 감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감사계획 등에 관하여 협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감사계획 등의 협의 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감사담당자의 자격)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감사담당자로 임용하려는 해당 기관에서 2년 이상 근무하였거나 다른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2년 이상 감사 관련 업무를 담당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을 감사담당자로 임용하여야 한다.

1. 공인회계사·세무사 등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격증 또는 감사 분야의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
2. 「상훈법」, 「모범공무원 규정」, 「정부 표창 규정」, 자치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서훈을 수여받거나 표창을 받은 사람
3. 그 밖에 감사기구의 장이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 자질, 적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자체감사의 종류)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자체감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중앙행정기관등의 업무 특성에 따라 달리 구분할 수 있다.

1. 종합감사: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주기능·주임무 및 조직·인사·예산 등 업무 전반의 적법성·타당성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2. 특정감사: 특정한 업무·사업·자금 등에 대하여 문제점을 파악하여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3. 재무감사: 예산의 운용실태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검토와 확인을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
4. 성과감사: 특정한 정책·사업·조직·기능 등에 대한 경제성·능률성·효과성의 분석과 평가를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
5. 복무감사: 자체감사 대상기관에 속한 사람의 복무의무 위반, 비위(非違) 사실, 근무실태 점검 등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감사

제11조(감사계획의 수립) ① 감사기구의 장이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연간 감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감사사항

2. 감사의 목적 및 필요성
3. 감사의 종류와 감사 대상기관 또는 대상부서
4. 감사의 범위
5. 감사 실시 기간과 인원
6.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② 감사기구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연간 감사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체감사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이 포함된 감사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③ 감사기구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감사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제12조(감사 대상기관 등에 대한 감사계획의 통보) ① 감사기구의 장은 법 제19조 제2항에 따라 감사예정일 7일 전까지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감사계획의 주요 내용(제11조제1항제1호,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을 말한다)을 자체감사 대상기관(자체감사 대상기관이 자체감사기구가 소속된 기관인 경우에는 자체감사 대상부서를 말한다. 이하 이 조, 제13조의2, 제13조의4 및 제15조에서 같다)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하여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감사기구의 장이 제1항에 따라 감사계획을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한 이후 감사계획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권한이 위임·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법 제15조 및 제17조에 따른 감사기구의 장 및 감사담당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② 감사기구의 장은 법 제20조에 따른 자체감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

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13조(일상감사)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일상감사(이하 “일상감사”라 한다)는 제2항에 따른 집행부서의 장이 제출한 서류 등에 의하여 실시한다. 다만, 감사기구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감사담당자 등을 현지에 보내 실지감사를 할 수 있다.

② 자체감사기구가 소속된 기관의 주요 정책 등을 집행하는 부서의 장(이하 “집행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업무의 수행에 앞서 감사기구의 장에게 일상감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1. 주요 정책의 집행업무

2. 계약업무

3. 예산관리 업무

4.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등의 장 또는 감사기구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집행부서의 장으로부터 일상감사를 의뢰받은 감사기구의 장은 일상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의견을 집행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집행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른 감사기구의 장의 의견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고 조치결과를 감사기구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제2항 각 호에 따른 업무의 결재권자에게는 감사기구의 장의 의견과 이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⑤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일상감사의 대상·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이 정한다. 다만, 감사기구의 장이 해당 기관의 집행기관과 독립하여 설치되어 있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감사기구의 장이 정한다.

제13조의2(신청에 의한 일상감사) ①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은 제13조제2항에 따른 일상감사 대상업무가 아닌 업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수행에 앞서 해당 감사기구의 장에게 일

상감사를 신청할 수 있다.

1. 인·허가 등 규제 관련 업무
2. 규제 관련 법령의 해석에 대한 이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민원 업무
3.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해당 감사기구의 장이 규제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일상감사를 신청받은 감사기구의 장은 대상 업무 처리에 대한 적정한 의견을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일상감사의 실시 방법 및 일상감사 후 조치결과 보고 등에 관하여는 제13조제1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집행부서의 장”은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으로 본다.

④ 이 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청에 의한 일상감사의 대상·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제13조의3(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의 기준) ①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이 법 제23조의2에 따라 적극행정면책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의 업무처리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공익사업의 추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
2.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이 대상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일 것
3. 삭제
4.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② 제1항제4호의 요건을 적용하는 경우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1.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2. 대상 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을 것
3. 삭제

4. 삭제

제13조의4(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의 운영절차) ①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 또는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이 법 제23조의2에 따른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적극행정면책 신청서에 적극행정면책 사유를 소명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자체감사가 종료된 후 감사기구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면책신청을 받은 감사기구의 장은 면책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면책결정을 하고 이를 자체감사결과의 처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감사기구의 장은 자체감사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직권으로 검토한 결과 법 제23조의2에 따른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면책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면책결정을 할 수 있다.

④ 감사기구의 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면책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라 면책결정을 한 때에는 면책을 신청한 사람에게도 이를 알려야 한다.

⑤ 감사기구의 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면책결정을 한 때에는 매 분기 종료 후 10일 내에 이를 감사원에 알려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의 운영절차 및 결과의 처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이 감사기구의 장의 의견을 들어 정한다. 다만, 감사기구의 장이 해당 기관의 집행기관과 독립하여 설치되어 있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감사기구의 장이 정한다.

제14조(조사 개시 통보 등) 법 제24조제1항에서 중앙행정기관등의 장과 특정사건에 대한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이 같은 경우에는 자체감사기구의 장이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에게 특정사건에 대한 조사를 개시하였다는 사실 또는 이를 종료하였다는 사실을 문서로 보고하면 각각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개시한 사실과 이를 종료한 사실을 통보한 것으로 본다.

제15조(재심의 사건의 심리와 처리 등) ①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이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재심의(再審議)를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재심의신청서를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재심의 신청을 각하한다.

1. 재심의 신청대상이 아니거나 재심을 신청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경우
2. 재심의 신청기간이 도과한 경우
3. 재심의신청에 따라 재심의한 사안인 경우
4. 행정심판(다른 법률에 따른 특별행정심판을 포함한다), 심사청구, 소송 등을 통하여 확정된 사안인 경우
5. 그 밖에 법 및 이 영에서 정한 재심의와 관련된 요건 및 절차를 갖추지 못한 경우

③ 제2항제5호의 경우 보정(補正)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심을 신청 받은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적절한 기한을 정하여 그 보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기간에 보정이 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적법한 재심의신청이 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정해진 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재심의신청을 각하한다.

④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법 제2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재심의 사건을 처리 하였을 때에는 재심을 신청한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에게 그 뜻을 문서로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⑤ 재심을 신청한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은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이 재심의 사건을 처리하기 전에 서면으로 재심의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⑥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법 제23조에 따른 감사결과를 통보한 사항으로서 직권으로 재심의하여 그 내용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재심의하여 감사결과를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제17조(중복감사 금지의 예외) 법 제33조에서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거나 중요한 사항이 누락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새로운 증거 또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2. 감사 증거서류 등이 위조·변조된 것이 증명된 경우

3. 감사결과에 영향을 미칠 만한 중요한 사항이 누락된 경우

제18조(감사계획의 협의 등) ①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감사원과 협의하기 위하여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감사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이를 곧바로 감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미 수립한 감사계획 중 감사사항, 감사 대상기관, 감사의 범위, 감사 실시 시기 등 주요 내용을 변경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감사원은 중앙행정기관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취약 분야 등에 대한 자체감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제11조에 따른 감사계획의 수립이나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감사계획 등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하거나 관련 감사기구의 장 등이 참여하는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제5조(독립성) ① 감사기구의 장은 감사기구의 독립성이 보장되도록 다음 각 호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1.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와 실질적으로 분리된 조직의 설치와 운영
2. 감사활동에 필요한 예산 확보
3. 감사담당자 우대조치 등을 통한 우수인력의 확보 및 교육훈련의 실시
4. 감사담당자에 대한 독자적인 평가와 성과 관리
5. 그 밖에 감사기구의 독립성 보장에 필요한 사항

② 감사기구의 장은 감사활동의 독립성이 보장되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감사계획 수립, 감사대상의 선정 등 감사활동에 대한 외부간섭의 배제
2. 자율적인 판단에 따른 자체감사의 실시와 감사결과의 처리
3. 외부의 간섭이나 관여 없이 자체감사기구가 소속된 기관의 장(이하 “소속기관장”이라 한다)에게 감사 관련사항을 보고
4. 그 밖에 감사활동의 독립성 보장에 필요한 사항

③ 감사담당자들은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 그 소속 직원 및 외부 이해관계자 등으로부터 감사의 독립성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감사담당자들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 외의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감사활동의 독립성이 침해될 정도로 과도하게 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감사담당자들의 회피 등) ① 감사담당자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감사수행의 독립성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감사기구의 장은 소속기관의 장에게, 감사담당자는 감사기구의 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1. 감사대상이 되는 기관, 부서 또는 업무와 관련이 있는 사람과 개인적인 연고나 이해관계 등이 있어 공정한 감사수행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감사대상이 되는 기관, 부서 또는 업무와 관련된 주요 의사결정과정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경우
3. 그 밖에 공정한 감사수행이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② 소속기관의 장 또는 감사기구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거나 감사담당자들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감사담당자들을 감사에서 제외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전문성) ① 감사담당자들은 감사원 및 감사·회계전문기관으로부터 감사계획 또는 방법에 대한 자문을 받거나 감사·회계교육을 이수하는 등 감사업무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갖추어야 한다.

② 감사기구의 장은 우수한 전문인력을 감사담당자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감사담당자의 전문성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감사담당자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 등을 고려하여 감사임무를 부여 하여야 한다.

③ 감사기구의 장은 감사담당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감사원 감사 등에의 참여를 권장하고, 감사 회계전문기관의 감사·회계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거나 필요한 경우 자체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④ 감사기구의 장은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 등이 요구되는 분야를 감사할 때에는 외부 전문기관 또는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받거나 필요한 경우 감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 제9조(청렴의무 등)** ① 감사담당자등은 감사대상기관의 직원 등 이해관계인과 일반국민으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높은 청렴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 ② 감사담당자등은 감사의 독립성이나 감사활동의 공정한 수행을 저해하는 청탁이나 압력 등이 있는 경우 감사기구의 장은 소속기관의 장에게, 감사담당자는 감사기구의 장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 또는 감사기구의 장은 보고사실을 조사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0조(보안유지 등)** ① 감사담당자등과 그 직위에 있었던 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 또는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해당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감사담당자등은 감사와 관련된 정보가 감사목적과 관계없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정당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③ 감사담당자등과 그 직위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연간 감사계획수립 방법) ① 감사기구의 장은 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연간 감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법 제31조에 따른 감사활동조정협의회의 협의·조정 사항
 2. 영 제18조제2항에 따라 감사원이 자체감사계획 수립 등에 관하여 제시한 의견 및 회의 결과
 3. 감사원 감사의 위탁 및 대행 사항
 4. 감사원 감사 등을 포함한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에 대한 감사빈도 및 주기
 5. 법 제22조에 따른 일상감사 등을 통하여 감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6. 국회, 지방의회, 언론, 및 시민단체 등에서 감사의 필요성을 제기한 사항
 7. 그 밖에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 및 그 소속 직원 등의 위법 또는 부당한 업무처리나 복무규정 위반 등이 우려되어 감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 ② 감사기구의 장은 연간 감사계획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개별 감사사항

별로 감사계획의 수립, 감사실시 및 감사결과 처리 등을 주관할 감사담당자를 지정할 수 있다.

제12조(감사의 사전준비) ① 감사담당자등은 제13조에 따른 감사계획을 수립하거나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감사자료를 수집·분석하는 등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1. 관계법령 및 훈령 지침 예규 등 내부규정
2.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의 기능·조직·인력·예산 등 일반현황
3. 주요 업무계획 및 심사분석 결과
4.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
5. 언론보도사항, 국회 및 지방의회의 논의사항
6. 기존 감사결과 및 처분요구 집행상황
7. 그 밖에 민원, 감사정보, 감사대상 일부에 대한 표본조사 등 각종 감사자료

② 감사기구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감사자료를 조사·확인하거나 감사대상의 문제점을 도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감사기구의 장은 감사의 사전 준비를 위하여 법 제38조에 따라 감사원에 감사계획 또는 감사방법에 대한 자문 또는 인력지원을 요청하거나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13조(감사계획의 수립 등) ① 감사기구의 장은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영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2. 감사 착안사항 및 감사방법, 감사자료 확인결과
3. 감사단 편성 및 개인별 감사사무분장
4.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② 감사기구의 장은 감사목적을 달성하고 감사성과를 확보할 수 있도록 감사담당자의 전문지식 및 실무경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제3호에 따른 감사단을 편성하고 개인별 감사사무분장을 정하여야 한다.

③ 감사기구의 장은 감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감사기

구가 소속된 기관(그 소속기관 및 소관단체를 포함한다)의 다른 부서의 직원을 감사단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④ 감사기구의 장은 감사단에 포함된 감사담당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감사계획
2.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의 주 기능 및 임무
3. 감사대상 업무의 특수성
4. 감사 착안사항 및 감사기법
5. 실지감사 시 주의사항
6. 그 밖에 감사수행에 필요한 사항

⑤ 감사기구의 장은 감사성과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감사계획 등을 미리 공개하여 이해관계인 또는 일반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감사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14조(감사계획의 주요내용 통보) 감사기구의 장은 영 제12조에 따라 감사계획의 주요내용을 통보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문서로 하여야 한다.

1. 감사대상
2. 감사범위
3. 감사기간 및 감사인원

제15조(자료제출요구 등의 방법) ① 감사담당자등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자료제출요구 등을 할 때에는 일시·장소·대상 등을 기재한 요구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실지감사 중이거나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구두로 할 수 있다.

② 감사기구의 장은 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자체감사 대상기관이 아닌 중앙행정기관등에 자료 또는 정보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요청서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요청 전에 해당 요청 내용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특히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후에 보고할 수 있다.

1. 자료 또는 정보가 필요한 자체감사의 명칭

2.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구체적 범위 및 이용 용도

3. 자료 또는 정보를 이용하지 아니하면 자체검사가 불가능한 사유

③ 제2항에 따라 자료 또는 정보를 제출받은 감사담당자등은 그 자료 또는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제2항제3호에 따른 구체적 이용 용도 외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실지감사의 실시) ① 감사기구의 장은 법 제21조에 따른 실지감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제14조제3호에 따른 감사인원에 맞게 감사장을 설치하도록 하고, 감사에 필요한 자료를 가능한 한 미리 요구하여 구비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감사기구의 장은 제13조제1항에 따른 감사계획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지체 없이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감사담당자등은 필요한 경우 감사대상기관이 보관하고 있는 현금·예금·유가증권 등의 시재액을 확인하여 관계 장부와의 부합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④ 감사담당자등은 실지감사 중에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의 일상 업무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⑤ 감사담당자등은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의 직원이나 외부인이 감사 자료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다음 각 호의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감사장 내 서류보관함에 잠금장치 사용

2. 사무용 컴퓨터 및 이동식 저장장치에 암호 설정

3. 감사장 철수시 감사자료가 감사장 또는 컴퓨터 등에 남지 않도록 완전 파기

4. 그 밖에 감사자료의 유출을 방지하는데 필요한 보안조치

제17조(실지감사의 지휘와 책임 등) ① 감사기구의 장은 실지감사를 위하여 제13조 제2항에 따라 감사단을 편성하고자 할 때에는 감사단장을 지정하여 감사단을 지휘·감독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휘·감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감사목적과 임무의 주지

2. 감사기법의 지도 및 현장 교육

3. 감사업무 수행내용의 검토

4. 개인별 감사사무분장의 변경

5. 그 밖에 실지감사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항

③ 감사단장은 실지감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13조에 따른 감사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거나, 감사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기관 또는 사항을 감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감사기구의 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④ 감사단장은 감사담당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감사업무를 위법 또는 부당하게 수행한 때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감사단장이 해당 감사담당자에 대한 지휘와 감독에 정당한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9조(실지감사의 종결 등) ① 감사단장은 실지감사기간 내에 감사를 종결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감사기구의 장에게 사유를 보고하고 실지감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감사단장은 감사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지감사 종료 전에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를 대상으로 주요 감사결과를 설명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20조(감사 중인 사건의 처리) ① 감사기구의 장은 감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감사 중에 있는 위법·부당사항에 대하여는 감사결과 처분요구 등이 있기 전에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에서 사전조치를 할 수 없도록 그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해당 감사대상기관의 장 또는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25조제4항에 따라 현지에서 시정조치하거나 사전조치를 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감사기구의 장은 감사 중에 있는 사항으로서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되고 증거인멸이나 도피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21조(일상감사의 처리) ① 감사기구의 장은 집행부서의 장이 영 제1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업무에 대하여 일상감사를 의뢰하지 않은 경우 집행부서의 장에게 일상감사를 의뢰하도록 할 수 있다.

② 감사담당자들은 일상감사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집행부서의 장 및 그 직

원에 대하여 법 제2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요구받은 집행부서의 장 및 그 직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 ④ 감사기구의 장은 영 제13조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조치결과가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집행부서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고, 소속기관의 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 ⑤ 감사기구의 장은 일상감사의 접수·처리상황을 관리하기 위하여 일상감사처리 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22조 (증거서류의 확보 등) ① 감사담당자등은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입증을 위하여 필요한 관계서류 등의 등본 또는 사본을 징구하고, 그 대상이 물건이나 상태인 경우 사진 촬영 등의 방법으로 증거를 확보하여 추가적인 감사나 법적 분쟁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② 감사담당자등은 증거서류의 증거능력과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의 부담정도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고도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여야 한다.
- ③ 감사담당자등은 증거서류의 신빙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증거서류의 출처와 근거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비밀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④ 감사담당자등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 금고·창고·장부 및 물품 등을 봉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즉시 증거를 확보하고,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에 협조를 요청하는 등 증거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3조(확인서의 징구 등) ① 감사담당자등은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의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자로부터 관련 사항에 대한 사실관계 등을 기술한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 ② 감사담당자등은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이 변상명령,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중요한 사안에 관련된 관계자의 책임소재와 한계를 규명하고 행위의 동기, 배경 또는 변명을 듣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문답서를 작성한다.

③ 감사기구의 장은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그 사유 및 개선방안 등을 듣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사항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정한 직위의 책임자에게 질문서를 발부하고 답변서를 징구한다. 다만, 실지감사 중인 때에는 감사단장이 질문서를 발부할 수 있다.

제25조(감사결과의 처리기준 등) ① 감사기구의 장은 제24조에 따라 도출된 감사결과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변상명령 :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상 책임이 있는 경우
2. 징계 또는 문책요구 : 「국가공무원법」과 그 밖의 법령에 규정된 징계 또는 문책 사유에 해당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자체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게을리한 경우
3. 시정요구 :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추정·회수·환급·추급 또는 원상복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주의요구 :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그 정도가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이르지 아니할 정도로 경미하거나,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에 대한 제재가 필요한 경우
5. 개선요구 : 감사 결과 법령상·제도상 또는 행정상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권고 : 감사 결과 문제점이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그 대안을 제시하고 감사대상기관의 장 등으로 하여금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
7. 통보 : 감사 결과 비위 사실이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요구를 하기에 부적합하여 각 기관 또는 부서에서 자율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8. 고발 : 감사 결과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제4호에 따른 주의요구는 위법성 또는 부당성의 경중에 따라 각 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훈계, 경고 등으로 세분화할 수 있다.

③ 감사기구의 장은 손해의 보전 등을 위하여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법

적 쟁점 등으로 인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다른 감사 결과와 분리하여 처리할 수 있다.

- ④ 감사기구의 장은 실지감사 중 경미한 사항으로서 제1항제3호의 시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때에는 현지에서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그 시정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28조(감사결과의 통보 등) ① 감사기구의 장은 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자체감사 대상기관에 감사결과를 통보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행문을 작성하여야 한다.

1.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감사결과 처분요구 및 조치사항
2. 감사결과 종류별 처리기한 및 결과 회보 의무
3. 법 제25조 및 영 제15조에 따른 재심의 신청에 대한 안내문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감사결과 종류별 처리기한 및 결과 회보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변상명령 : 변상책임자가 변상명령서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안에 변상하도록 조치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회보
2. 징계 또는 문책요구 : 1개월 안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그 의결 결과를 지체 없이 회보
3. 시정요구 : 2개월 안에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회보
4. 개선요구·권고·통보 : 2개월 안에 집행 가능한 사항은 그 기간 내에 적정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회보, 집행에 2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사항은 2개월 안에 추진일정 및 계획 등이 포함된 집행계획을 우선 회보한 후 집행계획에 따라 조치한 결과를 지체 없이 회보, 다만 징계조치 여부를 일임한 통보(인사자료) 사항은 1개월 안에 적정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회보

③ 감사기구의 장은 제23조에 따라 확인서, 답변서, 문답서를 징구하였으나 감사결과로 처리하지 않기로 결정한 사항 중 일반국민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거나 공무원의 신분상·재산상 책임과 관련이 있는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10일 이내에 관계기관 또는 관련자 등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29조(감사결과와 공개) 법 제26조에 따라 감사결과를 공개하는 때에는 공개의 시기·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고 이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제30조(재심의신청의 처리절차) ① 감사기구의 장은 법 제25조에 따른 재심의신청을 받은 경우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해당 감사결과에 관여하지 않은 감사담당자가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감사기구의 장은 재심의신청의 처리에 필요한 경우 신청인 또는 관련자의 의견을 듣거나 보완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감사기구의 장은 재심의신청의 처리 결과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보고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그 처리 결과를 재심을 신청한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31조(이행결과와 확인) ① 감사기구의 장은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제출된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의 이행결과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보완자료를 요구하거나 이행을 독촉하여야 한다.

② 감사기구의 장은 감사결과 처분요구 및 조치사항에 대한 사후관리의 적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 확인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감사기구의 장은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의 장이 제28조제2항에 따른 처리기한 내에 적정한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그 사유 및 조치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통보하도록 할 수 있다.

④ 감사기구의 장은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결과 처분요구 또는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때에는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32조(회계감사기준의 준용) 기업회계기준 또는 이에 상당한 회계기준에 따라 처리되고 있는 업무에 대하여는 이 규칙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공인회계사의 감사준거가 되는 회계감사기준을 준용할 수 있다.

제33조(세부사항 등) ① 감사원장은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규칙 및 제1항에 따라 감사원이 정한 세부사항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③ 감사담당자등이 자체감사를 수행함에 있어 이 규칙의 해석상 의문이 있는 경우 감사원에 의견을 구할 수 있고, 감사원은 이에 대하여 해석·답변한다.

□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제4조(감사계획의 수립 등) ① 주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감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연간 감사계획을 미리 수립하여야 한다.

1. 감사사항
 2. 감사의 목적 및 필요성
 3. 감사의 종류와 감사대상 지방자치단체
 4. 감사의 범위
 5. 감사기간(감사활동 수행기간과 제18조제2항에 따라 감사결과에 포함될 징계 등의 처분요구나 조치사항을 결정하는 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감사인원
 6.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 ② 주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연간 감사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감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감사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여야 한다.
- ③ 주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감사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감사계획의 통보) ① 주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4조 제1항에 따른 연간 감사계획의 주요 내용을 매년 1월 31일까지 감사대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실시하여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주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연간 감사계획을 통보한 후 이를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감사대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실시하여야 할 긴급한 사정

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감사계획의 협의 등) ① 주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4조에 따라 연간 감사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에 따라 감사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미 수립한 감사계획 중 감사사항, 감사대상 지방자치단체, 감사의 범위, 감사기간 등 주요 내용을 변경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주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제4조제2항에 따라 연간 감사계획과 별도로 수립한 감사계획에 대하여 다른 주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나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감사와의 중복 여부 등을 검토하여 해당 주무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7조(사전조사 등) ① 주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185조에 따라 위임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감사대상 선정의 적정성, 문제점의 도출 및 취약분야의 확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전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감사대상과 관련된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확인
2. 감사대상의 일부에 대한 표본조사

②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90조제2항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사람이나 민원인, 그 밖의 제3자로부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처리가 법령에 위반된다는 정보가 수집된 경우 그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서류나 장부 등의 확인
2. 신문·방송 등 언론매체나 정보통신매체 등에 의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처리가 법령에 위반되는 것으로 공개된 내용의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서류나 장부 등의 확인
3.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 중 특정 분야에 관하여 제출받은 자료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 중 법령에 위반되거나 위반되는 것으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무에 대한 서류나 장부 등의 확인

- ③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 결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 처리가 법령을 위반하였거나 위반한 것으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사무를 감사대상으로 특정하여 미리 감사일정 등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감사반 편성·운영) ① 주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3조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해당 기관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감사반을 편성·운영하여야 한다.

- ② 주무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조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감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각 주무부장관 소속 공무원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감사반을 편성·운영할 수 있다.

제9조(감사의 주기) 주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4조의 연간 감사계획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되, 정부합동감사와 시도종합감사는 2년의 범위에서 주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다만, 주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감사 인력, 감사대상 사무의 특성 및 감사대상 지방자치단체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정부합동감사와 시도종합감사의 실시 주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0조(감사기간 및 활동의 연장) ① 주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185조, 제190조 및 제191조제2항에 따라 감사를 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라 통보된 감사기간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그 감사기간 동안 감사를 마칠 수 없는 경우에는 감사대상 지방자치단체에 그 사유와 연장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통보한 후 감사기간을 연장하여 실시할 수 있다.

- ② 감사활동의 수행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에 따른 근무시간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증거인멸 및 진술 번복 방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간을 연장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자료제출 요구) ① 주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감사할

동 수행기간 동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감사대상 지방자치단체나 그 소속 공무원 또는 그 밖에 감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출석·답변의 요구(「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요구를 포함한다)
 2. 관계 서류·장부 및 물품 등의 제출 요구
 3.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의 조사
 4. 금고·창고·장부 및 물품 등의 봉인(封印) 요구
-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는 감사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를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 ④ 주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감사대상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다른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기관(같은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기타공공기관으로서 직원의 정원이 100명 미만인 기관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보유한 자료 또는 정보를 이용하지 아니하면 감사를 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⑤ 주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감사활동을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는 감사를 위하여 제출받은 정보 또는 자료를 감사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12조(확인서의 요구) ① 제8조에 따른 감사반에 편성되어 감사활동을 수행하는 사람은 감사와 관련된 사항의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대상 지방자치단체나 그 소속 공무원 또는 그 밖에 감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부터 사실관계 등을 적은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 ② 제8조에 따른 감사반에 편성되어 감사활동을 수행하는 사람은 감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확인된 사항이 징계 사유에 해당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사안에 관련

된 자의 책임소재와 한계를 분명히 하고 행위의 동기·배경 또는 변명을 듣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자와의 문답서를 작성할 수 있다.

- ③ 주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8조에 따른 감사반의 감사활동 수행 결과, 감사대상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위법·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및 사무 처리의 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한 사항 등에 대하여 감사대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그 소속 기관의 장, 그 밖에 해당 감사대상 사무와 관련이 있는 자로부터 설명이나 변명 등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질문서를 보내고 답변서를 받을 수 있다.

제13조(외부 전문가 등의 자문) ① 주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예산·회계·보건·환경·건설 등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외부 전문기관이나 외부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자문에 응한 외부 전문기관이나 외부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시·도지사 간 공동감사) ① 시·도지사는 감사대상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하는 시·군 및 자치구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해당 시·군 및 자치구가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경우에는 그 사무에 대하여 관계 시·도지사와 공동으로 감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 규모 및 사무의 처리 분량 등에 비추어 주된 시·군 및 자치구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감사를 주관하되, 관계 시·도지사와 따로 협의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② 제1항의 감사를 하기 위한 감사반의 편성, 감사의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주된 시·군 및 자치구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관계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정한다.

제15조(감사의 생략) 주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감사대상사무를 적법하고 공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노력한 감사대상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감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6조(중복감사 금지) 법 제191조제1항에서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거나 중요한 사항이 누락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새로운 증거 또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2. 감사 증거서류 등이 위조·변조되었음이 증명된 경우
3. 감사결과에 영향을 미칠 만한 중요한 사항이 누락된 경우

제17조(비밀유지 의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감사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1. 주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2.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전조사 업무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3. 제8조에 따른 감사반에 편성되어 감사를 수행하는 사람, 그 밖에 감사와 관련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직에 있었던 사람

제18조(감사결과에의 통보 및 처리) ① 주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감사활동 수행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2항에 따라 감사결과에 포함될 징계 등의 처분요구나 조치사항을 결정하여야 하며, 그 결정을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감사결과를 감사대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활동 수행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다른 감사를 하여야 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제2항에 따라 감사결과에 포함될 징계 등의 처분요구나 조치사항 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감사결과에는 징계, 문책, 경고, 훈계, 시정, 주의, 개선, 권고 등의 처분요구나 조치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③ 주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감사결과를 감사대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면 「지방공무원법」 제73조제3항에 따라 조사를 마쳤다는 사실을 알린 것으로 본다.
- ④ 감사대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감사결과 중 경고 처분요구에 대해서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대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주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해당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직접 공개할 수 있다.

- ⑤ 감사대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60일 이내에 감사결과의 조치사항을 이행하고, 그 이행결과를 해당 주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 등의 사유로 그 조치에 장기간이 필요한 사항인 때에는 앞으로 조치할 계획을 제출함으로써 이행결과 통보를 갈음할 수 있으며, 그 조치가 완료된 때에는 조치결과를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 ⑥ 감사대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징계 처분요구 중 중징계(파면·해임·강등 또는 정직을 말한다) 사건에 대하여 관할 인사위원회가 징계의결의 요구와 다르게 경한 의결을 한 경우에는 그 집행을 하기 전에 지체 없이 주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징계의결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심사 또는 재심사 청구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 ⑦ 주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5항 본문에 따라 이행결과를 통보받거나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조치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감사대상 지방자치단체의 이행결과 또는 조치결과의 적정성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제19조(감사에 따른 제도개선 요청 등) 주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감사결과 법령상, 제도상 또는 행정상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항을 관계 행정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제20조(재심의 신청 등) ① 제18조에 따라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감사대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처분요구나 조치사항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주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재심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이유와 내용을 분명히 밝히고, 필요한 증거서류가 있으면 첨부하여야 한다.
- ③ 주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재심의를 신청받

은 때에는 지체 없이 재심의 신청 안전을 검토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재심의 신청 안전을 접수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④ 주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재심의 신청 안전을 검토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재심의 신청을 각하하고,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각하며,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감사결과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1. 재심의 신청대상이 아니거나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경우
2. 재심의 신청기간이 지난 경우
3. 재심의 신청에 따라 재심의한 사안인 경우
4. 「행정심판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행정심판,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 청구 또는 소송 등을 통하여 확정된 사안인 경우
5. 그 밖에 재심의와 관련된 요건 및 절차를 갖추지 못한 경우

⑤ 주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4항제5호의 경우 보정(補正)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적절한 기한을 정하여 그 보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기간에 보정이 된 경우에는 적법한 재심의 신청이 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정해진 기간 내에 보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재심의 신청을 각하한다.

⑥ 제1항에 따라 재심의를 신청한 감사대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재심의 신청 안전을 처리하기 전에 재심의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제21조(직권 재심의) 주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8조에 따라 감사결과를 통보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증거서류 등의 오류·누락 등으로 그 처분요구나 조치사항이 위법 또는 부당함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이를 직권으로 재심의할 수 있다.

□ 경기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감사위원회의 설치)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경기도 자체감사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경기도지사(이하 “도

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합의제감사기구인 경기도 감사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감사위원회의 기능) ① 감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감사정책 및 주요 감사계획에 관한 사항
2. 징계 및 문책 처분 요구에 관한 사항
3. 회계관계직원 등에 대한 변상명령 처분 요구에 관한 사항
4. 시정, 주의, 개선, 권고, 고발 등의 처분 요구에 관한 사항
5. 재심의 및 적극행정 면책에 관한 사항
6. 감사위원회 소관 규정의 제정 및 개정·폐지에 관한 사항
7. 감사위원회 사무기구의 조직 및 정원 요구에 관한 사항
8. 감사위원회 예산 요구 및 결산에 관한 사항
9. 감사사무의 의뢰 및 대행에 관한 사항
10. 감사 생략에 관한 사항
11. 감사위원회 위원의 제척 등 결정 및 신분보장에 관한 사항
12. 부패방지 및 청렴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감사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위원장이 처리한다.

1.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항 중 경미한 것으로서 제23조에 따른 감사위원회 규정으로 정하는 사항
2. 비위사항·정보 및 동향보고에 대한 조사의 개시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감사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

제4조(감사위원회의 구성) ① 감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4에 따른 개방형직위로 하고 도지사가 임용한다.

③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도지사가 위촉하되 비상임으로 한다. 이 경우 위원

2명은 경기도의회의 추천을 받아 도지사가 위촉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감사위원회를 대표하고 감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감사위원회의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위원장이 공석이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으로 최장기간 재직한 위원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다만, 재직기간이 같은 위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가 그 권한을 대행한다.

제11조(감사위원회 회의) ① 감사위원회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는 위원장이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한 사안이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감사위원회 규정으로 정하는 사항은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④ 회의 출석 및 안건 심사에 참여한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서면심 의 수당을 포함한다)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감사대상기관) 감사위원회의 감사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본청과 소속기관
2. 「경기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
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도가 설립한 지방공사
4. 도비 보조단체·기관
5. 도 관할 시·군(「지방자치법」 제185조 및 제188조부터 제19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으로 한정한다.)

제17조(지방공사와 출자·출연기관의 자체감사활동 지원 및 심사 등) ① 감사위원회는 제16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기관의 자체감사활동의 발전과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감사계획이나 감사방법에 대한 자문에 응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한다.

② 감사위원회는 제16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기관의 자체감사기구 운영실태, 감사기준 및 감사활동수칙 준수 여부, 자체감사 활동, 감사결과 및 그 처리 등을 심사할 수 있다.

③ 제16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체감사가 종료된 후 60일 이내에 그 감사결과를 감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외부인 등 민간참여) ① 감사위원회는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에 따른 민간 위탁사무 및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보조사업에 대한 감사사무 중 사실의 조사·확인 및 분석 등의 사무로서 도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감사를 수행하는 자에게는 법 제27조의 규정을 따른다.

제19조(적극행정면책) ① 감사위원회는 감사결과 공무원 등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그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불이익 처분 등을 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면책에 대한 요건·절차·방법 등은 감사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제20조(감사결과의 통보 및 처리) ① 감사위원회는 감사활동 수행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2항에 따라 감사결과에 포함될 징계 등의 처분요구나 조치사항을 결정하여야 하며, 그 결정을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감사결과를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감사결과에는 변상명령, 징계, 문책, 경고, 훈계, 시정, 주의, 개선, 권고, 고발 등의 처분요구나 조치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감사위원회는 이행결과 또는 조치결과의 적정성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제21조(감사결과의 공개 등) ① 감사위원회의 감사결과는 원칙적으로 공개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감사결과의 공개 기준·범위·시기·방법 등은 감사위원회 규

정으로 정한다.

제22조(감사대상자 등의 권익보호) ① 감사위원회는 감사대상자 등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감사권익보호관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감사대상자 등의 권익보호와 감사권익보호관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감사위원회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23조(감사위원회 규정) 감사위원회는 이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을 감사위원회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24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등을 따른다.